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10월 16일(금)
10:00~12:00
경기상상캠퍼스

주최: 경기도

주관: 부천YMCA

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교육청



04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부천YMCA

- 토론 의제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 토론 일시 2020. 10. 16. (금) 10:00~12:00
- 토론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제4토론장
- 토론 참석 대안유아교육기관 관계자, 학부모, 도의원, 도민 등
- 토론 취지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제도화된 모범적인 사례이고, 우리사회를 보편적으로 전환시킨 의미 있는 제도임.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정착되었지만 제도밖에 있는 대안학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다 작년부터 대안초등학교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있음.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아직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유치원·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월 22만원의 지원을 받으나 교육청에 동의하거나, 대안적인 교육을 하고 싶어서 YMCA아기스포츠탄 등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만 받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서도 제외되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음.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9:40	10:00	20'	▶ 참석자 접수
10:00	10:10	10'	▶ 개회 및 토론회 취지 설명 사회: 권소연 부천YMCA 사회교육부 부장
10:10	10:15	15'	▶ 주제발표-무상급식,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발표자: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10:15	10:30	15'	▶ 주제발표-대안유아교육기관, 무상급식 정책제안 발표자: 김기원 부천YMCA 사무총장
11:00	11:20	20'	▶ 자유토론 좌장: 강옥희 광명YMCA 총무하고 교장 토론: 강태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이하나 구름산자연학교 학부모
11:20	12:00	40'	▶ 참여자 전체 종합토론 및 폐회 진행: 권소연 부천YMCA 사회교육부 부장

무상급식,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권리¹⁾

박 민 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 경기도가 25개 시·군 118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8,203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²⁾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용인시,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2020년부터 광역 단위로 확장된 것이다. 광주시(광)가 2013년, 서울시가 2014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많이 늦은 편이다. 경기도와 충남도, 부산시, 제주도가 작년과 올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초·중·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하는’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제 비법정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문제가 기초·광역 자치단체 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풀렸듯이 도내 대안유아교육기관의 급식 지원도 기관이 소재한 기초 시·군 및 경기도의 실정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올해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급식 지원 사업 개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식품비 전액을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온 부천시, 안양시 등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30% 만큼 예산을 덜 쓰게 됐다. 경기도가 급식비를 대응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급식지원 사업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부천시, 안양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경기도가 대응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조리원 인건비, 급식시설 개선비 등 급식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요 경비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³⁾

- 2018년 과천시의회는 전액 과천시 예산으로 해오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50% 감액했다가 이듬해 번복한 일이 있었다. ‘법정 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는 교육청과 과천시가 절반씩 부담 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 부담분이 없으니까 식품비의 절반만 지원해야 한다’는 어느 공교육 학부모의 민원을 일부 시의원이 여과 없이 의회로 가져가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 민원인은 과천 시민이 낸 세금을 공교육

에 50 쓰고 대안교육기관에 100을 쓰니까 법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와 관계없이 과천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급식 지원을 원한다’는 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로 유야무야되었다.⁴⁾ 이제 경기도 급식비 부담분이 생겼으니까 과천시에서 이런 ‘역차별’ 소동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 경기도의 급식비 지원은 ‘신청주의’ 방식이다. 아동·청소년의 재학 사실이 확인된 대안교육기관이 시·군에 신청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 없이 급식비를 지급하고 지출 내역을 사후 관리한다. 급식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시적인 자료를 보유·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연구기관에서 탈학교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연구를 시행했지만 조사 시점과 정책 집행 간의 시차를 좁힐 수 없어서 연구결과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고 사업에 인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마다 매번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다시 했지만 대안교육기관과 아동·청소년의 부정확한 숫자를 세는데 그쳤을 뿐 정책에 반영할 만한 싼박한 연구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 경기도의 급식비 대응지원으로 시·군 간 급식비 지원 불균형이 해소되었다. 작년 까지 도내에는 식품비와 급식시설 개선비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식품비조차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많았다.⁵⁾ 또한 개별 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아동·청소년에 한해서 식품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⁶⁾ 이런 불균형은 탈학교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관한 시·군의 정책의지와 근거 조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4) 성명서 별첨

5) 안양시가 교육활동비, 급식비 등 이외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는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

2019년 안양시 미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 (정보공개청구, 단위:천원)

분	총 계	교육 활동비	안전·경비 (처우개선비)		급식비 (추계)
총 계	333,718	110,000	86,400	12,400	124,918
안양MCA초·중·고 대안교육기관	142,035	55,000	28,800	5,000	53,235
새들생명을 배움터 경당	80,223	25,000	28,800	4,400	22,023
안양 발도르프학교	111,460	30,000	28,800	3,000	49,660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관내 거주 아동·청소년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오던 용인시는 올해 초 경기도의 급식비 대응 지원 개시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 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용인시 관내 설치·운영하는 미인가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1) 본문에서는 편의상 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 자체는 무상급식의 매개체일 뿐 실질적인 수혜자는 아동·청소년 개인이므로 이 글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인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목에서 ‘보편적 권리’는 ‘법률이나 제도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썼다.

2)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추진계획”, 경기도

3) 「학교급식법」에서 급식비,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를 말한다.(제2조제3호)

것으로, 경기도 매칭 사업이 되면서 적어도 식품비는 기초 시·군 관내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말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기초 시·군은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 시·군마다 접근 방법과 계기는 달라서 지원 근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두는 경우, 급식 조례의 기타 조항에 두는 경우, 급식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을 표시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한편, 경기도 급식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급식비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매개 기관이 더욱 분명해졌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안교육기관’은 법정 용어가 아니지만, 경기도와 기초 시·군 조례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이제 급식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법률 근거가 없어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경기도가 발표한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추진계획”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이라는 단서를 달고 유치원 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초·중·고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에 유치원이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유치원이 ‘학교’로 분류되고, 개정 「학교급식법」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학교급식대상’에 표시했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가 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보자면 비인가 병설 유치원인 셈이다. 인가 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때 병설·단설을 따지지 않듯이 비인가 유치원에 대해서도 굳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이라는 단서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비인가 어린이집 역시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를 뿐 급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서 볼 때 비인가 유치원이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비인가 어린이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와 지원방법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하고 앞서 초·중·고 대안교육기관들이 지나온 경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7) 유치원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개정 이전에도 유치원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학교급식법」에 표시됨에 따라서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를 갖게 됐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급식비 재원은 전액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대상)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신설, 시행일 2021.1.30.)

- 2020년 기준 경기도 사립 단설유치원의 급식단가는 2,730원이고 대부분의 기초시가 교육청과 50대 50으로 대응 지원하고 있다.⁸⁾ 급식비를 따로 책정하고 있는 유치원 급식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중 일정액 이상을 급식비로 쓰게끔 권고하고 있을 뿐 급식비 항목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⁹⁾ 보육료 지원이 없는 대안유아교육기관의 급식비는 별도 책정이 불가피하다. 그 해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초·중·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단가산정 방식을 그대로 쓰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시·군의 급식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또는 일부 조문의 개정만으로도 근거를 만들 수 있다.¹⁰⁾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유아 무상급식에 대한 의회나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은 시·군이라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경기도 초·중·고 대안교육기관들의 급식비 지원사업도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조례에 대한 시·군 간 해석 차이로 인해서 지원규모,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조례에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제5조(지원대상)의 기타 조항을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하거나,¹¹⁾ 좀 더 적극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8) 공·사립 병설유치원 급식단가=초등학교 급식단가-190원 차감(급식학생 수 구간별 차등)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등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곳도 있다.

“2020년 학교급식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

9) 어린이집 급식비는 통상 보육료에 포함된 1,900원(0~2세) 및 2,500원(3~5세)을 정부지원 급식비, 아동 1인당 월7,400원 도비지원 급식비(도비30%, 시비70%)를 고정값으로 놓고 시·군마다 간식비, 영양 급식비, 건강과일, 우수농축산물 지원비 등을 추가하고 있다.

· 남양주시 어린이집 급식단가 구성

영아(0~2세) : 2,470원 = 1,900원 + 370원(=7,400원÷20일) + 200원(건강과일)

유아(3~5세) : 3,070원 = 2,500원 +370원 + 200원

· 하남시의 경우 「하남시 보육조례」를 근거로 아동 1인당 월 15,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칙 기준>

3) 급식·간식재료비

가. 적용범위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구입비 및 간식비

나. 일반사항

○ 보육 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에서 시설별·지역별 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020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

10) 예를 들자면,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3호에 괄호를 두는 개정을 하거나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유아교육기관을 제6호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해석하면 된다.

<조례 개정을 할 경우>

현 행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후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미인가 포함)

1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2.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9.3.13

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사업이 개시된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추진계획”에 대안교육기관 유치원 과정이 포함된 것은 향후 대안유아교육기관 급식 지원에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아직 딱 맞는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에 대안유아교육기관을 설명하는 조례는 아직 없다. 급식비 지원 사업을 계기로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위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어디쯤에 설정하고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표시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시·군에서 초·중·고 대안교육기관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식품위생법」 적용 문제가 난감했다. 급식시설 없이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도시락을 공급하는 곳, 외부 업체로부터 완성품 도시락을 주문해 먹는 곳, 급식시설은 있는데 조리원 이외에 영양사를 둘 형편은 안 되는 곳 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우려와 달리 영양사를 공유하거나 담당 부서에서도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한 조리 형태를 인정하는 등 시·군마다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갔고 지금은 급식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선행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의 급식에서도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대안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리형태, 조리시설, 급식방법 등을 인정해야 한다.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에서 경험한 것처럼 대안유아교육기관의 부모 참여 문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급식지원비가 온전히 아동들의 영양과 교육에 쓰일 수 있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 보론 :

- 1) 무상교육·무상보육에 급식비를 포함해야 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¹²⁾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게 합헌 결정의 이유다.

그런데 판결문은 이어서 <국가의 재정 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반 여건이 변하면 무상교육·무상보육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급식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청이 나

12)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4.24. 2010헌바164 판결

서서 ‘교육급식’이라고 부르고, 유·초·중·고 모든 학교 급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은 무상교육·무상보육의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³⁾

- 2) 상위 법률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근거 법률은 「학교교육법」이고, 이 법률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초·중·고 학교, 「유아교육법」이 정한 유치원을 의미한다. 제4조제4호의 ‘대안학교’ 역시 법정 대안학교를 지칭하고, 기타 조항인 제5호에서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급식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교육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설립 인가를 받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¹⁴⁾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고 대안교육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그 근거를 「학교교육법」이 아닌 조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 조례의 근거법은 「학교교육법」이지만 급식 조례가 반드시 법률이 정한 사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학교교육법」이 위임하지 않은 사업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¹⁵⁾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배척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 별첨 : 과천시 관문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성명서

“과천의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과천시의회가 2018년 12월 20일 대안학교 급식비 예산 50%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시 공교육 학부모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식에 관문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과천의 아이들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

13)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하려면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3항을 삭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제8조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넣는 법률 개정을 하게 될 것이다.

15) 국가 수준에서 정한 「학교교육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주민의 수익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다. 법률에 대한 조례의 자율성을 설명하고 있는 대법원 2006.10.12. 2006추38판결 참고

을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가 감액된 예산을 되돌려 주길 바랍니다.

1. 과천시는 정부정책이 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앞서 가는 지자체입니다. 과천의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왔고, 그 이유로 과천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립 학교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50%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천시의 지원 비율이 50%로 조정되었을 뿐, 학교급식의 공적 책임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똑같이 과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그 시작도 늦었고 비율도 작았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 2018년 10월 들어 처음으로 100%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과천시의회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결정사항을 뒤집으며 2019년 급식비 지원금을 감액했습니다.
3. 과천시의회 결정 근거에 ‘공립학교 학부모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관문초 학운위 학부모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떤 의견수렴의 과정도 경험한 바 없습니다. 이는 일부 학부모의 의견일 수 있으나 과천 공교육 학부모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과천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는데 기꺼이 마음을 내고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4. 반대내용에는 공립학교의 일인당 급식지원비보다 대안학교 급식지원비가 높게 책정되어 불공평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수에 따른 급식지원기준표에 의한 것으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1인당급식비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식에 의한 것입니다.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차이이며 불공평한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5. 과천시의회는 무상급식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어가는 이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관내 대안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삭감한 결정을 되돌리기 바랍니다.(끝)

2019년 1월 8일

관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작은 차이의 넉넉한 이해’를 강조한 이 성명서는 과천시의회 결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안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지역사회의 지지와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대안유아교육기관, 무상급식 정책제안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1. 우리나라 유아 보육·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지원체계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초·중등 교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 보육·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그만큼 국가·주도 교육에 비해 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와 유아의 학습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법 제8조는 ① 모든 국민은 6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6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상기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한국의 의무교육, 두산백과)

유아교육 취원율(출처: e-나라지표)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이용자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취원율: 전국의 만3-5세 유아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비율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 취원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살펴보면,

지표명: 유아교육 취원을					
단위: %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동수(A)	유치원 원아수(B)	총 아동 및 원아수 (A+B)	취학적령인구 (만3~5세 추계인구)	유아교육 취원을
2019	568,586	633,913	1,202,499	1,301,410	92.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만 3~5세 유아 중 어린이집(43.6%), 유치원(48.7%)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조금 더 많고,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가 98,911명(7.6%)이다.

문제는 유아교육 취원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유아들은 질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유아 보육·교육의 취약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표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등록인원

(단위: 명, %)

연도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국립	공립	사립
2017	1,450,243 (100.0)	186,916 (12.9)	96,794 (6.7)	43,404 (3.0)	738,559 (50.9)	321,608 (22.2)	4,508 (0.3)	58,454 (4.0)	694,631 (100.0)	249 (0.0)	172,272 (24.8)	522,110 (75.2)
2018	-	-	-	-	-	-	-	-	675,998 (100.0)	249 (0.0)	172,121 (25.5)	503,628 (74.5)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7, 2018(각년도 4월 1일 기준).

〈표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기관 수

(단위: 개소, %)

연도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국립	공립	사립
2017	40,238 (100.0)	3,157 (7.8)	1,392 (3.5)	771 (1.9)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9,029 (100.0)	3 (0.0)	4,744 (52.5)	4,282 (47.4)
2018	-	-	-	-	-	-	-	-	9,021 (100.0)	3 (0.0)	4,798 (53.2)	4,220 (46.8)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7, 2018(각년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중심으로 발전하여 기관에 다니는 어린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2.9%,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87.1%/ 국공립유치원 24.8%, 사립유치원 75.2%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0월 5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주최 박용진 국회의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방해로 토론회를 시작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되었고, 뉴스를 통해 그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어 (일부 물지각한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인해) 유치원 전반에 대해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형성되었다. 발제자도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우리나라의 왜곡된 유아교육 구조로 인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노고와 애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발표할 내용인 『경기도 교육청의 시민감사관 활동 결과』는 “회계부정, 영수증 훼손, 증빙서류 미비, 부정사용, 부적절사용 등” 유아교육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낯 뜨거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 ‘급식비 부정사용’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하여 당시에 ‘보육·교육 통합’ ‘누리과정’ ‘양육수당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었고, 그 결과 유아 보육·교육은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종일반 29만원, 맞춤반 22만원을 지원하고,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가 98,911명(7.6%)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인당 약 78만원을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니 지원을 확대하라”,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고착화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을 받는 유아 간에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 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체계 >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양육수당
	종일반(7시30분~19시 30분)	맞춤반(9시~15시)	
만 3~5세 누리과정	29만원 (22만원+방과후 7만원)	22만원 (정규반)	10만원

이러다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사립유치원은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작년에 집단 휴원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학부모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진행되는 ‘전계층 무상보육’은 유아·학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인데 기관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대안유아교육기관, 무상급식 정책제안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고, 우리나라를 ‘보편복지’로 전환시킨 상징적인 운동이다. 부천시 지역의 경우, 부천YMCA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부천시민 13,332명이 참여한 부천시 최초 주민청구 조례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점차 확대되어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인가 대안학교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올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급식비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바람직한 일이다.



2013년 11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 등이 신청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대안유아교육기관 중 급식 지원을 받는 곳은 여수YMCA ‘아기스포츠탄’이 유일하다. 여수YMCA 아기스포츠탄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유아 140명에 대해 연간 10개월(1월~2월은 제외), 3천 1백 4만원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NON-GMO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으로 연간 1,93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경기도 역시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안유아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재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추진계획’(도비: 시군구, 30:70/ 경기도 청소년과)

□ 지원대상 : 25개 시·군 118개소 8,203명(예상)

- 도내 대안교육기관(인가·비인가)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
 - 단, 유치원생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재학생에 한함
 - 시·군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지원대상 선정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시·군내 대안교육기관
 - 2020년 지원대상 기관은 2019년 시·군 수요조사 시 반영된 기관
- ※ 2020년 신규로 신청한 기관은 시·군 수요조사에 반영(8월초 예정)된 경우만 익년도부터 지원

아직은 계획만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과정의 유아들도 반드시 급식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보편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역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유아교육기관’이다. ‘대안유아교육기관’이 ‘대안학교’와 달리 지금까지 ‘비인가’ 논쟁에서 빠져있었던 것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에 걸 맞는 제도적 위치를 부여한다면 ‘대안유아교육기관’ 역시 논의 주체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보편복지의 상징인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

나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비인가’ 문제보다 보편복지와 공정(公正)이 핵심이다.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 98,911명(7.6%)에 대해서도 급식, 교육, 건강 등 보육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3~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 유아수(19.12.)

시도별	유아수
서울특별시	35,456명
부산광역시	8,058명
대구광역시	4,251명
인천광역시	6,829명
광주광역시	2,649명
대전광역시	2,690명
울산광역시	3,130명
세종특별자치시	869명
경기도	35,972명
강원도	1,573명
충청북도	2,075명
충청남도	2,840명
전라북도	1,974명
전라남도	1,766명
경상북도	2,422명
경상남도	5,380명
제주특별자치도	1,162명
합 계	119,096명

주) 2쪽 자료와의 인원 차이는 조사시점의 차이로 파악됨.

YMCA 아가스포츠탄

1. 아이의 자기다움을 키워주자¹⁶⁾

저 높고, 큰 하늘에서 반짝이던 작은 별
지구로 살며시 내려와
엄마 품에서 아기가 되었다.
그 아이, 별을 닮은 아이
눈도 반짝반짝, 이마도 반짝반짝
세상이 궁금도 하여, 왜? 왜? 왜?

별이 지상으로 올 때는 망각과 함께 온다지
그래서 그 아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대지와 자연을 느끼는 기운이 흠어들수록
반짝이던 빛은 약해진다.

하지만 넌 별이야!
넌 너만의 별이야!
그것만은 잊지 말고,
마음 깊은 속에서 조용히 깜박거리는
생명의 빛을 바라.

그 빛은 자연과 어울릴수록
이웃과 나눌수록
나답게 설수록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춘다.

아가스포츠탄을 넘어가는 아이야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야

한국YMCA는 1976년에 아가스포츠탄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유아 교육은 인지 활동을 중시하고 신체 활동을 등한시하던 분위기였다. 이와 달리 아가스포츠탄은 몸, 마음, 생각을 통합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오늘날까지 아가스포츠탄은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섯에서 일곱 살까지의 아이들에게 평생을 튼튼하게 살아갈 삶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해 왔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아 교육, 아니 어린이 교육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아이교육을 인지적 활동이나 기능습득 정도로** 폭 좁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인식으로 우리 유아들은 한글과 숫자 깨우치기, 피아노 수업, 태권도 익히기, 영어 수업 등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아이가 나이보다 일찍 한글을 배우냐, 아니냐에 따라 부모들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자. 자라는 아이들을 긴 시간 지켜보면, 한글을 조금 일찍 배운 아이가 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표현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좀 이르거나 늦었다고 하여 아이의 성장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고유의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자기 고유의 글과 말로 그것을 드러내는 능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교육의 속도나 양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유아 교육은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보다, 한글 맞춤법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외우고 있는 영어단어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연연하고 있다.

유아 교육의 바탕은 아이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음악에도 소질이 있으며 운동에도 뛰어나고 친구들과 사귀에서도 모범적이며 발표도 남다른 아이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역사를 뒤져보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일에 다재다능한 천재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물은 극히 예외적이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은 어느 경우에는 장점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아 교육에서는 아이의 자기다움과 아이의 특성을 찾고, 이것이 아이의 장점으로 자라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되어 상처받고 단점으로 놀리기보다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도와줘야 한다. 눈높이 교육을 넘어서서, 부모와 교사가 하느님이 선물로 준 **아이만의 특성과 빛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굳게 믿으며, 아이가 자라면서 당당하게 그 빛을 살려 가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아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몸, 마음, 생각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역

16) 『 스스로 크는 아이, 더불어 사는 아이』(평사리 출판사, 2015년) 서문, 부분 수정

활임을 YMCA는 인식했다. 운동능력이 있는 아이는 그 특성을 잘 살려주면서 넓은 마음과 독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논리능력이 있는 아이는 그 특성을 잘 살려주면서 넓은 마음과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자연 결핍, 놀이 결핍, 관계 결핍** 속에 놓여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몸, 마음, 생각의 바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는 ‘잃어버린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아이의 세계’로 여행하는 길이고, 아이를 중심에 놓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2. 한국Y 아기사포츨단의 흐름

1) 서울Y 아기사포츨단 창단(1976년)

유아교육에서 인지적 활동만이 중요시되던 1976년 서울YMCA는 아기사포츨단을 창단한다. 아기사포츨단 모집 목적은 “취학 전 아기들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기르고, 원만한 인격 형성을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만 4세~6세 사이에는 신체발달에 중점을 두어 마음대로 뛰고 놀아 신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는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능력과 튼튼한 몸을 키워 장래 생활에 기초적인 도움을 주는 감성적인 경험을 쌓을 때라고 한다. (유아체육과 YMCA-아기사포츨단, 청년 1970년 7월호)

2) 이후 대도시YMCA에서 아기사포츨단을 창단하고, 1980년에는 ‘YMCA유아체육 교육에 관한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980년부터 서울Y 아기사포츨단 프로그램도 분기별 프로그램(하루 2시간)에서 장기 체육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체육의 기술과 방법을 익히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놀이와 게임을 통해 정서적인 발달과 지능발달도 병행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변화”하기 시작한다. 1983년부터 송파지회에서 연간사업으로 아기사포츨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3) 1985년 부천Y 아기사포츨단이 시작되면서 일반 유아교육과정의 수업인 영지교육과 체육교육의 비율을 5:5로 구성하고, ‘영(Spirit)지(Mind)체(Body)’의 발달을 영지교육과 체육교육의 균형적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전국Y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기사포츨단을 창단하고 활성화하였다.

4) 2000년대 초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기사포츨단을 ‘유아대안 교육’으로 해석하는 지역Y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지체 통합성을 하나의 수업 안에 녹여내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또한 아기사포츨단 교육에 ‘생명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국Y 아기사포츨단이 위축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0년대 후반부터 ‘한국Y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안연구 및 교사교육’ 및 지원 정책 방안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여왔다.

3. 대안유아교육기관으로서 YMCA 아기사포츨단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획일화, 서열화 교육에서 다양화, 특성화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해결이 현행 교육체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대 초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안학교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초등 이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유아교육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와세다 대학 교수(의학박사)이자 인터넷서널 건강한 아이 지원 네트워크 대표인 마에하시 아키라씨는 ‘아이의 미래만들기’라는 소책자에서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먹고, 움직이고, 잘 자자**”하는 **생활, 식사, 운동을 통한 생활리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취지를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것이 YMCA 아기사포츨단이다. 부모들은 유아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에 처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 가정연계교육,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것이 아이의 생애교육과 부모·아이 관계를 결정짓는다.

유아대안교육기관으로서 YMCA 아기사포츨단의 교육특성은 『YMCA유아교육 시리즈』(양서원 출판사, 2010년)에 잘 담겨있다.

<YMCA 유아교육시리즈 1~6 : 양서원 출판사>



유아교육시리즈1
숲속 학교



유아교육시리즈 2
신나는 공동체놀이



유아교육시리즈 3
바른 먹을거리



유아교육시리즈4
생활속 작은 살림



유아교육시리즈 5
튼튼 놀이



유아교육시리즈 6
기구운동



『스스로 크는 아이, 더불어 사는 아이』(평사리 출판사, 2015년)의 주제 ‘마음이 커지는 신체활동’ ‘치유로서의 몸 놀이’ ‘자연에 꼭 빠져 감수성을 기른다’ ‘마을에서 화해와 실천을 배운다’ ‘아이도 부모도 성장하는 교육’은 아گی스포츠탄에서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이 모든 책의 저자가 **YMCA 아گی스포츠탄 현장교사**라는 점이다.

전국Y 아گی스포츠탄은 매년 ‘공장과자 안먹기’와 ‘TV 바르게 보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학기

초에 시작하는 ‘공장과자 안먹기’ 운동은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좋은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의 기초를 만들고자 진행하는 운동이고, 가정의 달인 4월말~5월초 일주일간 “TV를 끄면 가족이 보입니다.”라는 주제와 함께 TV를 끄면서 진행되는 ‘TV 바르게 보기 운동’은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고,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국Y 아گی스포츠탄 7세 어린이들은 매년 9월 중순에는 지리산 노고단을 함께 등반하기도 한다.

4. 부천YMCA 아گی스포츠탄을 통한 부모참여 및 운영구조

1) 학부모 모임 : 반모임, 섬김지기모임, 등대모임, 아빠모임 등

YMCA가 다양한 학부모 모임을 진행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다른 유아교육기관들의 경우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데 왜 YMCA는 굳이

시끄러울 수 있는 부모들을 서로 만나게 하느냐?”였다 물론 처음 부모모임을 시작할 때 교사들 역시 부담스러워 했다. 이유는 부모들이 제시하는 그 많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 수렴해서 반영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였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모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YMCA를 이해하고 교육철학이나 목적을 이해하는 부모들이 늘어날수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가정과 이웃,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방안들을 제시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또한 YMCA아گی스포츠탄에 아이를 보냄으로써 아이의 성장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무관심했던 부모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한다. 아래는 YMCA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부모모임에 대한 소개이다.

이웃과 함께 키우는 ‘반모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을 안에는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이웃이 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웃이 함께 하는 마을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부천YMCA 아گی스포츠탄에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웃을 공간개념의 마을이 아닌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마을의 이웃이 되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고자 반모임을 제안하고 9년째 이어오고 있다.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이웃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반모임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다. 또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갖는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모임이며, YMCA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목적을 공유하며 확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반모임을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에 주목했다. **교사와 부모간의 소통, 부모와 부모간의 소통, 부모들간의 상호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반모임은 1년에 4회(분기별) 진행되며 각 모임의 주제나 내용들은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게 된다. 정기모임 외에도 반모임이 필요한 경우 간헐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섬김지기모임’

부천 YMCA 아گی스포츠탄의 모든 교육과정은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아گی스포츠탄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심은 많으시지만 대부분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쉽다. 이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실 부모들을 섬김지기로 추천한다. 섬김지기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는 딱딱하고 권위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각 반의 봉사자이며 학부모와 YMCA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을 통해 각 반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의견

을 전달한다. 더 나아가 YMCA 다양한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하면서 주부에서 활동가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빠의 참된 모습을 찾는 ‘아빠모임’

‘건강한 가정 만들기,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를 목표로 아버지 교실, 좋은 아빠모임, 아빠랑 놀자 등의 아빠모임이 꾸려지고 YMCA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회의 운동을 실천하기도 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교류하기도 하며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의 힘겨움을 서로 나누기도 한다. 평소 자녀 교육은 엄마의 몫이라 말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변화가면서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해 가는 모임이다.

세상의 변화에 중심에 선 여성들의 모임 ‘등대’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한다. 가정은 가장 최소단위의 사회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단위의 사회이다. 모든 변화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변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 YMCA는 1990년대부터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아가시포츠탄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소모임을 만들고 그동안 가정에서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던 주부들이 가정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담배 자판기 철거 조례를 만들어 내고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장터를 열어 기금을 마련하고 김장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왔다. 또한, 대장들neck지키기, 미세먼지 줄이기, 탈핵(에너지문제) 등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정을 감시하고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2) 참여구조: 현장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섬김지기를 통한 부모참여

현장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YMCA 아가시포츠탄은 여느 유아교육기관보다 현장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짜여진 틀 안에서 교사들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삶에 대한 에너지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사들이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해 서로간의 인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며 함께 만들고 평가는 냉철하게 하며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자연스러우려면 교사들의 삶 또한 변화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란 쉽지 않고 진정성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YMCA는 교사교육에 더욱 전념한다. 교사들의 마음 밝히기 평가를 위해 평화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을 키워가는 과정을 갖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섬김지기를 통한 부모참여

아가시포츠탄의 모든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각종 행사들은 교사들과 섬김지기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물론 섬김지기들은 개인의 의견보다는 각반 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을 가지게 된다. 전 달을 평가하고 오는 달의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반영한다. 부모가 운영에 함께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YMCA와 부모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상황들을 직접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을 갖기도 한다.

3) 운영구조

부천YMCA는 재단법인이며 비영리단체로서 아가시포츠탄 부모들도 모두 회원이 된다. 매월 이사회를 실시하고, 두 달에 한번 재정보고를 하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감사 2인(세무사, 회원대표)이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재정보고와 감사보고를 회원 모두에게 하고 있다.

토론 1.

장태환(경기도의회 의원)

토론 2.

이하나(구름산 자연학교 조합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곱 살 아이를 광명시 소재에 있는 비인가 대안유아교육기간 구름산 자연학교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또 다른 형태의 대안유아교육기간인 부모협동시설에서 15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비인가 대안유아교육기간인 구름산 자연학교에 아이를 보낸 계기는 부모협동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협동시설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형태이지만 보육과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고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아이(유아)들을 위해 만들어 가는 보육환경들이 제가 저의 아이를 키울 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들 중에서도 대안유아교육기간인 구름산 자연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 보육을 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비인가를 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인가 대안유아교육기간들이 절대 다른 유아교육기간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태와 교육의 방법들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아이(유아)들을 위해 각자의 방법대로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든 인가를 받지 않았든 아이(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인가 대안유아교육기간을 선택함으로써 높은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제가 여유로워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이가 그곳에서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급식의 경우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보육료를 통해 모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는 비인가 교육기관을 택함으로써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매달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유아교육기관에 보내어 지원받는 비용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비인가 유아교육기관들도 아이(유아)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다니는 구름산 자연학교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모두 제철에 맞는 친환경 먹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유아)들이 자라면서 꼭 필요한 것!! 먹거리를 비인가 유아교육기관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아교육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급식지원원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유아)들은 다양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인가 유아교육기관도 그 중에 하나의 형태입니다. 제가 의왕시 소재에 있는 부모협동시설에서 근무했을 때 의왕시는 관내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과일지원사업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는 더욱 양질의 음식들로 채워졌고 당연히 더욱 건강해졌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높은 호응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인가 교육기관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유아)들이 교육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요??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해야하는 시대에 제도권교육 밖이라는 선택 때문에 아이(유아)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럼 이 권리를 위해서 교육방식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비인가 유아교육기관들은 부모의 자발적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른 유아교육기관들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 또한 국가와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또 하나의 건강한 운영방식을 만들어 낼 것이며 좋은 모델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비인가 유아교육기관에 급식지원을 함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높이는 계기가 되어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가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